

우리는,

기록관리가 국가와 사회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공공성 강화로 기록문화 유산과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선언한다.

## 광주광역시의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행정을 규탄한다

- '전문요원' 없는 공공기관 기록관. 어디까지 묵인해야 하나 -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5.18기록관의 기록연구사를 채용하는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공고는 '지방기록연구직'을 선발함에 있어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편차가 있겠으나 지방기록연구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6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요건에 크게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및 임용령,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규정 등 공무원 채용인사와 관련된 법령에도 특정 직렬의 자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기록공동체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심리가 강하다.

이번 채용에 대한 반발을 단순히 독점을 위한 배타주의적 성향의 발로라던지, 특혜 요구의 일환으로 치부하는건 단견이다. 기록관리는 본인이 속한 조직의 이력과 또는 기관의 사명과 미션에 알맞는 역사적 배경지식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업무운용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기록물법에 정해진 교육코스와 자격요건을 이수하였을 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써 공공기관에 속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역량을 인증하는 필요최소의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과목 등)와 동 규정 [별표 4]의 임용시험과목표에는 채용시험을 시행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규칙 제42조에 규정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과목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있다. 관련분야의 지식과 더불어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예 또한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증한 셈이다.

광주광역시의 소속기관인 5.18. 기록관은 공공기록물법 제3조에 규정된 '기록물관리기관'에 해당되며,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 대상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유형에는 속하지 않으나 이 논리로 전문요원이 필요없다고 하면 해당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에 있는 전문요원은 모두 해당 조항에 열거된 상급기관에만 배치하거나 배치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이 가능하다. 이는 전문요원 취득을 위해 1~2년간 수천만원의

비용과 시간, 노력을 소모한 수 많은 아키비스트 지방차들에 대한 기만이며, 이를 좌시한다는 건 그 어느 집단도 '전문요원'의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관심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전술한 점을 종합했을때 금번 광주광역시의 인사채용행정은 법적 불비나 하자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지방기록연구직'을 선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는 요건이다.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자면 '민주화운동'이라는 미시사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선발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은 필기고사 또는 면접이라는 단계에서 충분히 평정이 가능한 부분이며,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 법적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다면 한번은 검토하여야 한다.

이번 공고요건은 통상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해 심사평가위원을 위촉할때 적용하는 요건이다. 위원은 기관에 상주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다.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요건으로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규정된 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규정되어있지 않은 점을 이용한 변칙 채용의 일환이다. 광주광역시가 해당 기관에 '민주화운동사' 분야에 특화된 사료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고 싶었다면 '기록연구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내지는 '학예연구직'을 선발했어야 한다. 기록공동체에 속한 전문요원의 적지 않은 수는 임기제 돌려막기, 기록물관리와 관련없는 잡무분장 떠넘기기, 폐기 돌려막기 식 기록연구사 순환배치, 변칙적 채용(기술업무 겸업 등)등 전문요원으로써의 정체성을 고의적으로 약화시키는 채용작태에 오랜 분노를 지니고 있다. 현재는 채용이 끝났으나 차후 이와 같은 나쁜 채용에 '선례'를 창출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협의회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만에 하나라도 '전문요원이 미배치'된 해당기관 '기록연구직'에 의한 '공공기록물 평가·폐기' 행위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이번 채용 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전문요원 자격의 법적·사회적 위상에 대한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